



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시 고려사항

정원석 연구위원

요약

- 기획재정부는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.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환항목의 합리적인 선정과 소득공제 도입당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묘가 필요함.

- 기획재정부는 근로 소득자에 대한 소득수준별 세금 부담 형평성¹⁾ 개선을 위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폐지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(「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3년 6월 16일」).
-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에 대해 공제항목을 제외한 후 소득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임.
 -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의 특별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인 경우 6%의 세율에 의해 6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고,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38%의 세율로 38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됨.²⁾
- 세액공제제도는 해당 항목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정해 결정세액에서 차감 하는 방식을 적용함.
 -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%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1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됨.

- 소득공제방식의 조세 부담 역진성 문제는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음.

- 위의 예에서처럼 현행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 하더라도, 소득수준에 따른 한계세율로 인해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.

1)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의 수직적 형평성이라 할 수 있음.

2) 한국조세연구원(2013), 『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 비과세·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』.

■ ■ 현재의 소득공제제도는 (임금)근로소득자 비용처리 측면과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.

- 소득에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부분, 즉 인적공제, 의료비공제, 보장성 보험료공제 등의 항목은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됨.³⁾
-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,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입 공제 등은 정부의 특정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운용되는 소득공제 제도임.
 -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세원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, 세제적격 개인연금 저축액에 대한 공제는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음.

■ ■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는 항목 선정은 소득공제 혜택의 제공이유, 정책적 목적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것임.

-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처럼 정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었고 해당 법안 또한 일몰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는 타당함.
- 세제적격 개인연금처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함.
- 의료비, 보장성보험료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제도가 논리적으로 타당함.

■ ■ 정책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던 항목에 세액공제를 대신 도입하는 경우 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반응⁴⁾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공제율을 정해야 할 것임.

- 예를 들면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세금혜택은 중요한 가입결정 요인임.
 - 세액공제로 고소득층의 세금혜택이 줄더라도 연금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세금혜택이 줄어들어야, 개인연금 활성화 및 장기저축 증대라는 기존의 정책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임.

3) 누구에게나 비용처리는 같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수평적 형평성으로 생각 할 수 있음.

4) Individual Rationality Condition.

- 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.
 - 개인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해 극심한 노인빈곤이 발생 할 경우, 기초노령연금처럼 결국은 더 큰 부담을 정부가 질 수 있음.
 - 세수증대가 제도변화의 주목적인 경우 공제의 축소보다 세율 인상이 효과적일 수 있음.

■ ■ 상기 논의를 요약하면,

-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 혹은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은 필요함.
-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은 수직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할 것임.
-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 시 소득공제를 제공했던 원래의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 되어야 할 것임. [kiri](#)